

2022년 무주군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가 및 포상휴가 사용일수 공지

(2022. 1. 1. 기준)

연번	성명	연 가		임사일	적용일	포상휴가(포상, 장기근속)		비고	확인
		총일수	사용일수			잔여일수	총일수		
1	장진원	16	0	2018. 1. 1.	2022. 12. 31.	-	-		장진원
2	임정은	17	0	2016. 1. 1.	2022. 12. 31.	1	0	공로상 포상	이정은
3	공주홍	18	1	2014. 12. 11.	2022. 12. 10.	1	0	공로상 포상	공주홍
4	최윤경	16	2	2017. 8. 1.	2022. 7. 31.	-	-		최윤경
5	이지은	16	0	2018. 1. 1.	2022. 12. 31.	-	-		이지은
6	이영희	3.5/16	0	2018. 3. 1.	2023. 2. 28.	1	-	공로상 포상	이영희
7	박선희	16	0	2019. 1. 1.	2022. 12. 31.	-	-		박선희
8	황지원	16	6	2019. 1. 1.	2022. 12. 31.	-	-		황지원
9	최효진	16	0	2019. 1. 1.	2022. 12. 31.	-	-		최효진
10	백경빈	2.5/15	0	2020. 2. 1.	2023. 1. 31.	1	0	공로상 포상	백경빈
11	강민희	2.375/15	0	2020. 3. 1.	2023. 2. 28.	-	-		강민희
12	하주희	15	7.375	2020. 8. 6.	2022. 7. 31.	1	0	공로상 포상	하주희
13	문보라	2/15	0	2021. 2. 1.	2023. 1. 31.	-	-		문보라

■ 매해 회계연도 기준일 적용입니다.

■ 2021년 8월 31일자 기준 휴가원 제출 연차입니다.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 잔여일수를 확인하시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하여 “사용자가 제 60조 제1항,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 6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.” 는 것에 유념하시고 잔여일수를 해당 기한 안에 소모하시길 바랍니다.

- 전년도 8월 이상 출근시 연간 15일

- 2년마다 1일씩 가산/총 25일 한도

- 휴가일수 계산 예시

■ 2011년 2월 1일 입사일 경우

- 2011.02.01.~2011.12.31.까지 8월 이상 출근하고 2011.12.31.까지 연차 휴가를 한번도 사용을 안했을 경우

가. 2011.02.01.(~2013.01.31.): 15일 (입사해서 2년까지)

나. 2013.02.01.(~2014.01.31.): 15일(3년차)

다. 2014.02.01.(~2015.01.31.): 16일(4년차)

라. 2015.02.01.(~2016.01.31.): 16일(5년차)

마. 2016.02.01.(~2017.01.31.): 17일(6년차)

바. 2017.02.01.(~2018.01.31.): 17일(7년차)

사. 2018.02.01.(~2019.01.31.): 18일(8년차)